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26 |
|----------|----|

제출년월 : 1998년 10월 일  
제출자 : 광진구청장

### 1. 개정이유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건전재정 확보를 위한 자율적이고 성실한 신고 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유류소비 억제, 주차 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제공·폐지신고,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시설물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규모,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안 제15조 내지 제20조)
- 나. 주차장설치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용자 및 보조 대상과 방법, 용자금반환 등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안 제21조 내지 제22조)
- 다. 주차요금체계 개편(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 주차요금급지 세분 : 4단계 → 5단계
- 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확대(별표 1 비교의 제7호)
  - (1) 현행 : 50% 감면
  - (2) 개정 : 최초 1시간 면제, 나머지 시간은 50% 감면(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3시간 면제, 나머지 시간에 대해 80%감면 - 월정기권 포함)
- 마. 10부제 참여차량 및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를 위한 주차요금 할인 대한 사항을 규정(안 별표 1 비교의 제6호 및 제7호)
- 바. 10부제 참여차량 및 장애인차량에 대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우선권 부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안 별표 1 비교의 제9호)
- 사. 모범납세자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안 별표 1 비교의 제10호)

### 3. 관련법규

별첨 참조

### 4. 개정안

별첨 참조

## 서울특별시광진구조례 제 1호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을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한다.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1회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할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②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3조중 “10분 또는 15분 단위로”를 “10분 단위로”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로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부설주차장**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외 공지로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①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시설 배치도

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적 1200분의 1이상일 것)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 신고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중지·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이내로 한다.

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장 용자 및 보조

제21조(용자 및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용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4.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제22조(용자 및 보조의 방법) ①용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용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용자·보조한도, 상환기간, 이율을 등 용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구청장은 용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용자금의 반환) 용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용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
2.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용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별표 1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 구분<br>급지 | 노상주차장        |            |            |                          |      |              | 노외주차장      |      |                           |      |
|----------|--------------|------------|------------|--------------------------|------|--------------|------------|------|---------------------------|------|
|          | 2시간까지        |            | 2시간<br>초과  | 1일<br>주차권<br>(야간에<br>한함) | 월정기권 |              | 1회주차       |      | 월정기권                      |      |
|          | 1구획<br>최초30분 | 1구획<br>10분 | 1구획<br>10분 | 주간                       | 야간   | 1구획<br>최초30분 | 1구획<br>10분 | 주간   | 야간                        |      |
| 1급지      | 3천원          | 1천원        | 2천원        | 5천원                      | -    | -            | 2천400원     | 800원 | 25만원                      | 10만원 |
| 2급지      | 1천500원       | 500원       | 1천원        | 4천원                      | -    | -            | 1천500원     | 500원 | 18만원                      | 6만원  |
| 3급지      | 1천원          | 300원       | 600원       | 3천원                      | -    | -            | 1천원        | 300원 | 10만원                      | 4만원  |
| 4급지      | 600원         | 200원       | 200원       | 2천원                      | 5만원  | -            | 500원       | 200원 | 환승목적<br>주차시:4만원<br>기타:5만원 | 2만원  |
| 5급지      | 300원         | 100원       | 100원       | 1천원                      | 3만원  | 2만원          | 300원       | 100원 | 3만원                       | 2만원  |

\* 5급지 공용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월정기권은 4만원으로 함.

별표 1종 비교의 제3호·제6호·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 우리구 해당지역 없음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사업·업무기능이 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전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6.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가. 10부제 운행차량(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한 10부제 자율실천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나. 기타 시장이 정한 교통수요 관리정책 및 구청장이 도시교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을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을 소지한 자
  -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별표 1중 비고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구청장은 비고의 제3호마목의 주차장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이 월정기주차권을 신청시 주차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가. 10부제 운행차량(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한 10부제 자율실천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
10.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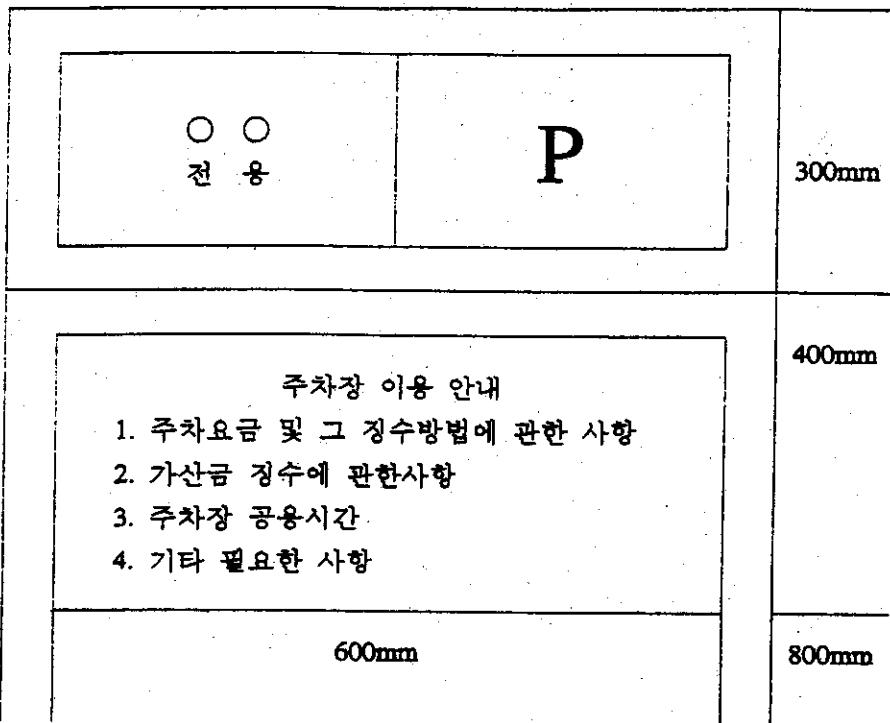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전용주차장표지판 (제5조 제3항 관련)



- 재 료 : 알루미늄, 아크릴
- 테 : 백색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고딕체
- 문 안 : (주민, 화물, 외교전용)
- 설치위치 : 주차장의 시작과 중간, 끝부분에 주차장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2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1. 외교관 전용의 경우 문자는 흑백, P는 청색, 바탕은 노랑색으로 한다.
  - 2. 외교관, 화물차의 경우 노면표시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면)

(제16조 제1항 관련)

|              |        |  |                                 |            |
|--------------|--------|--|---------------------------------|------------|
|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서 |        |  |                                 | 처리기한<br>5일 |
| 신고인          | ①성명    |  | ②주민등록번호                         |            |
|              | ③주소    |  | ④전화번호                           |            |
|              | ⑤명칭    |  | ⑥주차장의형태                         |            |
| 부설<br>주차장    | ⑦위치    |  | ⑧규모 (대)<br><br>m <sup>2</sup> ) |            |
|              | ⑨이용예정일 |  | ⑩                               |            |
|              |        |  |                                 | 수수료<br>없음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인)

- \*구비서류 : 1. 주차시설 배치계획
- 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축척 1200분의 1도이상)

광진구청장 귀하

신고 제 호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신고필증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19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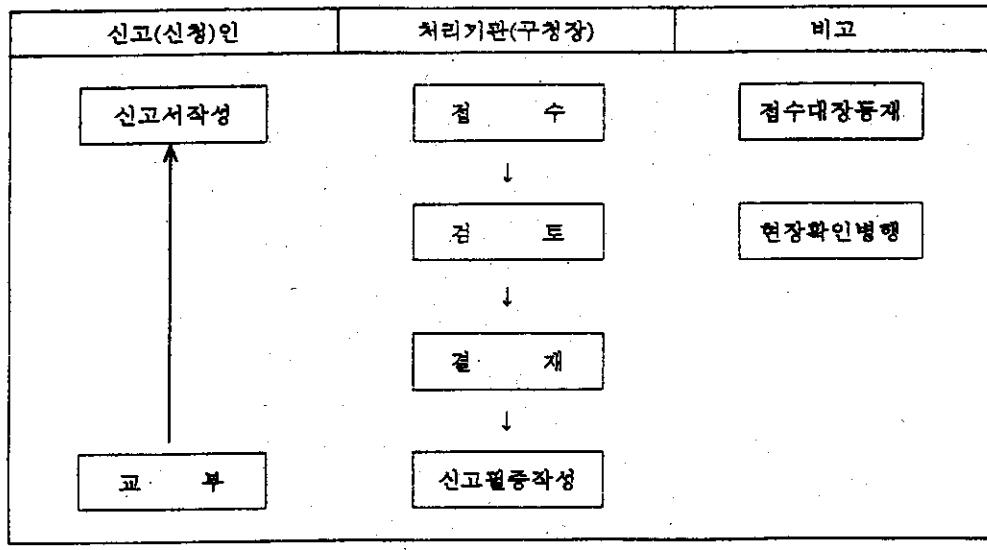
광진구청장(인)

(뒷면)

## ※ 기재시 주의사항

1. ①란은 전속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⑤란은 주차장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5. ⑦란은 주차장 소재의 위치
6.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제17조 제2항 관련)

|              |  |  |  |           |
|--------------|--|--|--|-----------|
| 부설주차장일반이용    |  | <input type="checkbox"/> 중지<br><input type="checkbox"/> 폐지 | 신고서  | 처리기한      |
|              |  |  |  | 5일        |
| 신고인          | ① 성명   |  | ② 주민등록번호   |           |
|              | ③ 주소   |  | ④ 전화 번호  |           |
|              | ⑤ 명칭   |  | ⑥ 주차장의 형태  |           |
| 부설<br>주차장    | ⑦ 위치   |  | ⑧ 규모 ( 대 m <sup>2</sup> )  |           |
|              | ⑨ 이용예정일  |  | ⑩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br><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           |
|              | ⑪ <input type="checkbox"/> 이용증지시설규모<br><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시설규모 |  | ⑫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일<br><input type="checkbox"/> 이용폐지일 |           |
| ⑬ 이용증지또는폐지사유 |  |  |  | 수수료<br>없음 |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인)

광진구청장 귀하

신고 제 호

부설주차장일반이용

 중지 폐지

신고필증

서울특별시광진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폐지)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19 년 월 일  
신고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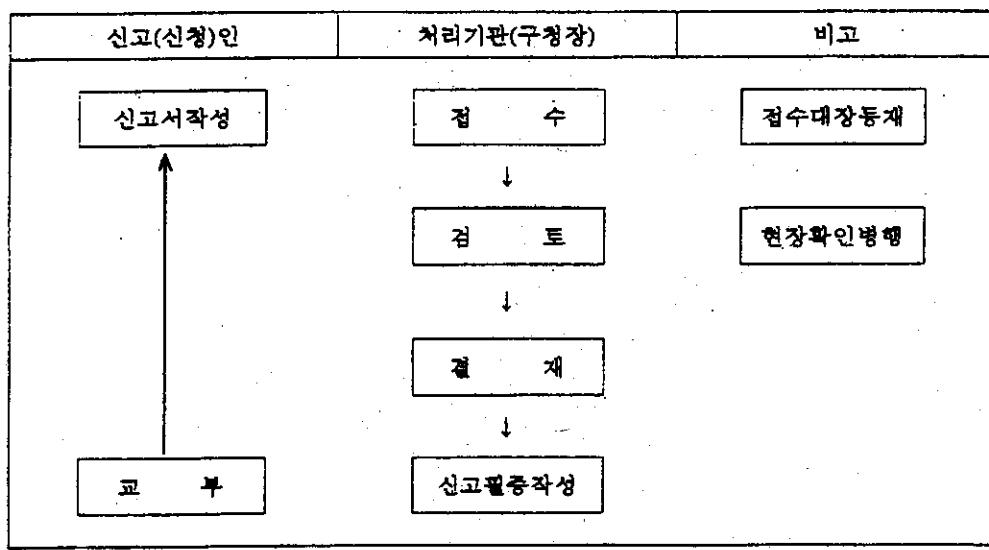
광진구청장 (인)

(뒷면)

## ※ 기재시 주의사항

1. ①란은 건축주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2. ③란은 신청(신고)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주소와 대표자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3. ⑤란은 주차장 명칭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4. ⑥란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주차장의 형태를 구분 기재합니다.
5. ⑦란은 주차장 소재의 위치
6. ⑧란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와 주차장의 면적을 기재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20조제2항 관련)

(앞면)

|  |   |
|--|---|
|  | No.<br><br><b>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b><br><br><input type="radio"/> 건축물위치 :<br><input type="radio"/> 사용자 :<br><input type="radio"/> 사용 기간 :<br><input type="radio"/> 이용주차장 : |
|  | 광진구청장(인)  |

글씨-검정색

(뒷면)

## 주의사항

1.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발행한 것입니다.
2. 앞면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이 공영주차장사용증은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8호 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20조 제2항 관련)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경 안  |
|---|--|
|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생략)</p> <p>②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부과되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p> <p>제3조(주차거부의 금지) (생략)<br/>1 ~ 6호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5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제9조(사용의 제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전부터 해제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p> <p>제13조(주차시간 단위)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시간 단위는 최초단위를 30분 이내로 하고, 최초단위를 초과할 때에는 10분 또는 15분 단위로 계산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 <p>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현행과 같음)</p> <p>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p> <p>제3조(주차거부의 금지) (현행과 같음)<br/>1 ~ 6호 (현행과 같음)</p> <p>7. 1회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이용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하고 있는 경우</p> <p>제5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시행규칙<br/>제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삼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p> <p>②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p> <p>③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3조(주차시간 단위) -----<br/>----- 10분 단위로 -----</p> <p>제14조의2(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시행규칙<br/>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균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균린공공시설로 한다.</p> <p>②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균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균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유통시설, 전시시설, 관광시설 또는 관람점화시설로 한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체&gt;</u></p> | <p>제4장 부설주차장</p> <p>제15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과 부지내의 풍지로서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p> <p>②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시간과 주차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p> <p>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신고) ①법 제1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물의 설치자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차시설 배치도</li> <li>2. 인근 300미터이내의 도로교통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 (측적 1200분의 1 이상일 것)</li> </ol>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7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일반 이용 신고후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14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5일이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일반이용 중지·폐지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1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150미터이내로 한다.</p> <p>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 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0]상으로 한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 <p>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의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아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p> <p>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노의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
| 〈신설〉 | 제5장 응자 및 보조   |
|      | <p>제21조(응자 및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서울특별시평진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응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의주차장 설치신고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li> <li>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일반이용신고를 한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li> <li>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li> <li>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li> </ol> |
|      | <p>제22조(응자 및 보조의 방법) ①응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      | <p>②응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응자·보조한도, 상환기간, 이자를 등 응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
|      | <p>③구청장은 응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p>  |
|      | <p>제23조(응자금의 반환) 응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 외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응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할 때</li> <li>상환기간중에 노의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li> <li>응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의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li> </ol>  |

四

### 공용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리)

| 구분  | 노상주차장  |      |           |       |           |     | 노외주차장  |     |      |      |      |     |
|-----|--------|------|-----------|-------|-----------|-----|--------|-----|------|------|------|-----|
|     | 2시간까지  |      | 2시간<br>초과 |       | 1일<br>주차권 |     | 행정기관   |     | 1회주차 |      | 행정기관 |     |
|     | 1구회    | 1구회  | 1구회       | (마간현) | 주간        | 야간  | 1구회    | 1구회 | 주간   | 야간   | 1구회  | 1구회 |
| 금지  | 10분    | 10분  | 10분       | 10분   | -         | -   | 2회400원 | 800 | 25만원 | 10만원 | -    | -   |
| 1점제 | 3천원    | 1천원  | 2천원       | 2천원   | -         | -   | 1회500원 | 500 | 15만원 | 6만원  | -    | -   |
| 2점제 | 1회500원 | 500원 | 1000      | 4천원   | -         | -   | 500원   | 200 | 4만원  | 2만원  | -    | -   |
| 3점제 | 600원   | 300원 | 300원      | 300원  | 5만원       | -   | 500원   | 200 | 4만원  | 2만원  | -    | -   |
| 4점제 | 300원   | 100원 | 100원      | 2000  | 3만원       | 2만원 | 300원   | 100 | 3만원  | 2만원  | -    | -   |

※ 4점자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이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 협정기한은 4만원으로 함.

### 개정안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 구분  | 노상주차장     |      |           |      |           |       | 노외주차장  |      |       |      |      |       |
|-----|-----------|------|-----------|------|-----------|-------|--------|------|-------|------|------|-------|
|     | 2시간<br>까지 |      | 2시간<br>초과 |      | 1일<br>주차료 |       | 설정기준   |      | 1주주차  |      | 설정기준 |       |
|     | 1구역       | 1구역  | 10분       | 10분  | (마감금)     | (마감금) | 주간     | 야간   | 1구역   | 1구역  | 주간   | 야간    |
| 금지  | 최대30분     | 10분  | 10분       | 10분  | (마감금)     | (마감금) | 주간     | 야간   | 최대30분 | 10분  | 주간   | 야간    |
| 1종지 | 3주년       | 1주년  | 2주년       | 5주년  | -         | -     | 2주년    | 400원 | 800원  | 2주년  | 300원 | 1000원 |
| 2종지 | 1년500원    | 200원 | 1년500원    | 400원 | -         | -     | 1년500원 | 500원 | 1000원 | 10년  | 400원 | 400원  |
| 3종지 | 1년500원    | 500원 | 1년500원    | 500원 | -         | -     | 1년500원 | 500원 | 1000원 | 10년  | 400원 | 400원  |
| 4종지 | 400원      | 200원 | 200원      | 200원 | 5주년       | -     | 500원   | 500원 | 200원  | 200원 | 200원 | 200원  |
| 5종지 | 300원      | 100원 | 100원      | 100원 | 3주년       | 2주년   | 300원   | 100원 | 300원  | 300원 | 200원 | 200원  |

## - 비 고 -

1 ~ 2 (생략)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우리구 해당지역 없음
    - 나. 2급지:1급지, 3급지 및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다. 3급지:지하철 환승주차장중 상업, 업무지역 인접에 있어 환승기능이 전환된 주차장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라. 4급지:(1)3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1~3급지 주차장중 아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81 -

### 1 ~ 2 (현행과 같음)

3. 급지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우리구 해당지역 없음

나. 2급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지하철 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전한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 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현 행  | 개 정 안   |
|--|---|
| <p>4호 내지 5호(생 락)</p> <p>6.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p> <p>가. 10부제운행차량(자동차 등록번호의 끝자리수가 운행일자와 같은 때에 운행하지 않는 것)</p> <p>나. (생 락)</p> <p>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p> <p>가 ~ 나 (생 락)</p> <p>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소형자동차(800cc)</u>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신설〉</p> | <p>4호 내지 5호(현행과 같음)</p> <p>6. 구청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할인한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p> <p>가. 10부제 운행차량(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한 10부제 자율실천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p> <p>나. (현행과 같음)</p> <p>7. —————— 100분의 5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1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 이용시에는 주차요금을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경형자동차</u>에 대하여 2·3·4·5급지 주차장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9. 구청장은 비고의 제3호 마목의 주차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p> <p>가. 10부제 운행차량(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한 10부제 자율실천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p> <p>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1급 내지 6급의 장애등급자로서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p> <p>10.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p> <p>〈신설〉</p> |

## 關係法

### □ 주차장법

#### 제19조 (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② 부설주차장은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인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의3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마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12.29>

②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일반의 이용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2조제5항·제13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제1항의 부설주차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1.12.14, 95.12.29>

[전문개정 90.4.7]

#### 제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①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95.12.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물을 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로 보아 동법 동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95·12·29>  
 [전문개정 90·4·7]

#### 제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등)

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차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5·12·29>

####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①노외주차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를 설치한다. <개정 95·12·2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구조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12·27, 91·12·14, 95·12·29>

### □ 주차장법시행령

####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6·6·4>

1. 오지·벽지·도서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기타 당해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준도시지역 또는 준농업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96·6·4>

#### 제7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법 제1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차대수 300대의 규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

여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개정 95·2·18, 96·6·4>

1.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3. 시설물의 부지가 너비 12미터이하인 도로에 접하여 있는 경우 도로의 맞은편 토지(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도로의 건너편에 있는 시설물 정면의 필지와 그 좌우에 위치한 필지를 말한다)에 부설주차장을 당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하는 경우
- ②법 제1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6·6·4>
1.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
  2. 당해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당해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 제8조 (주차장 설치외무 면제등)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외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2·18, 96·6·4>

#####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제1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시설물준공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교부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의주차장중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설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의 당해 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95·12·30, 96·6·4>